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9297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별지 1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피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피고별 각 일자부터 2025. 2. 14.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피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부터 원고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라는 명칭의 원피스 제품(이하 '이 사건 원피스'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그 판매 페이지에 이 사건 원피스나 이를 착용한 모델의 모습을 촬영한 별지 4와 같은 각 사진[1](갑 제2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번 사진'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사이트'란 기재 각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서 이 사건 원피스를 판매하면서 그 판매 페이지에 같은 표 기재 '피고별 이용 사진'란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진 중

1) 원고는 2024. 5. 16.자 석명준비명령 및 제2, 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별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진을 특정하라는 석명에 대하여 불응하던 중 2024. 10.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총 56장의 사진을 특정하였으나, 원고가 특정한 내역에는 소 제기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사진들이 추가되어 있어 이는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가 다수인 다수당사자 사건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별로 사용하였다는 사진이 무엇인지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변론 종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진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진의 목록은 갑 제63호증 중 소장에 첨부된 갑 제2호증과 중복되는 내역을 기초로 특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일부를 게시하였다.[2)]

[인정근거]

○ 피고 D, 주식회사 E, F, G, H, I: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3)]: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1, 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사진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각자의 판매 사이트 등에 이 사건 각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원고의 복제권[4)]을 침해하였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사진이 사진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제126조에 따라,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별지 3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피고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주식회사 E,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2.항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제출한 피고별 '홈페이지 사진'을 보면 판매 페이지의 대표사진 하단에 다수의 썸네일 이미지가 보이나 사진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별 이용 사진' 내역에서 제외한다.
3) 이하 피고들 중 피고 D, 주식회사 E, F, G, H, I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머지 피고들'이라 지칭한다.
4) 원고는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침해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복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백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법적 판단 내지 평가의 영역에 해당하여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기간 및 횟수, 위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위 각 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정한다.[5)]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3, 5, 6, 7, 8번 사진

5)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범위가 주위적 청구에서 인정한 금액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3, 5, 6, 7, 8번 사진은 판매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원피스의 특정 부분을 사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키고 근접한 상태에서 확대하여 촬영한 것인 점, ② 위 각 사진이 촬영된 목적은 피사체인 이 사건 원피스의 형태와 문양 등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직접 모델을 섭외하고 촬영장소를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원피스의 상품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빛을 조절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사진은 이 사건 원피스 제품을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고 배경 등이 드러나지 않으며 위 각 사진을 촬영한 구도나 밝기 등은 의류 제품에 대한 광고 사진에 널리 사용되는 표현방식에 불과하여 누가 찍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3, 5, 6, 7, 8번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정도로 창작적 노력과 개성이 드러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3, 5, 6, 7, 8번 사진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사진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사진 중 3, 5, 6, 7, 8번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은 이 사건 원피스의 다양한 형태가 드러나도록 의류를 착용한 모델의 모습과 자세를 설정하고 카메라의 각도와 구도를 설정한 점, ② 배경과 다른 인테리어 소품, 구조물을 함께 배치하여 촬영한 점, ③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절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하여 보면, 위 각 사진은 단순히 해당 제품을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촬영된 것으로 적어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성과 창조성은 드러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이라 한다)은 모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은 저작권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원피스를 판매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그 판매 페이지에 이 사건 침해사진 중 일부를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침해사진 중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피고별 이용 사진'란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진 중 일부를 같은 표 '사이트'란 기재 각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들은 도매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던 이 사건 원피스 정보를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등록하면서 이 사건 각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게 되었을 뿐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스스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사진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피고들로서는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사진저작물이 무단 복제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므로, 도매 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나머지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원피스에 대한 판매를 시작한 2015년도 매출액은 공급가를 기준으로 3,450,077,059원이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사진을 도용하여 게시한 2019년도의 매출액은 공급가를 기준으로 1,564,890,526원으로 합계 1,885,186,533원의 매출이 감소하였다. 원고의 매출에 따른 수익률을 21%로 계산하면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적어도 395,889,171원에 이른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여부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원피스에 대한 매출액 감소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침해사진에 대한 복제권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각자의 이익 범위나 원고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과는 관련이 없고, 나머지 피고들이 얻은 이익의 범위나 이 사건 침해사진의 1장당 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침해사진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다만,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의 경우 나머지 피고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나머지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가) 피고 B

앞서 든 증거, 을사 제1호증, 을아 제1호증, 을카 제1호증, 을러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 중 상당수는 피고 B이 도매 사이트에 등록한 이 사건 원피스의 상세정보와 사진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 각자의 판매 사이트에 등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이 이 사건 침해사진 중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침해사진의 저작물로서의 가치, 피고 B이 무단 이용한 사진저작물의 개수와 무단 사용의 방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5,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침해사진 중 일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피스를 판매한 수량이나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범위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침해사진이 보유하는 개성과 창조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 ③ 그 밖에 이 사건 침해사진 중 일부가 위 피고들이 게시한 판매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피고들이 무단 이용한 사진저작물의 개수, 무단 이용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해당 피고별 각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이 사건 침해사진 1장당 20,000원 × 이용 사진 개수 × 사이트 수).

다) 소결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피고별 각 일자부터 나머지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진 중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이 있더라도(앞서 살펴본 3, 5, 6, 7, 8번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피고들이 위 사진들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사진들은 원고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 점, ② 위 나머지 사진들은 상품에 대한 광고 사진에 널리 사용되는 표현방식에 불과하거나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피고들이 위 사진들에 대한 원고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6)]

5. 결론

6) 한편, 주위적 청구에서 일부 인용된 범위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범위가 주위적 청구에서 인정한 금액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김수현

판사 차현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별지 1]

피고들 목록

1. B
2. J
3. K
4. L
5. M
6. N
7. O
8. P
9. Q
10. R
11. D
12. S
13. 주식회사 E
14. T
15. U
16. V
17. W

이하 별지 생략(순번 18~4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별지 2]

인용금액표

순번	피고	사이트	피고별 이용 사진	이용 사진 개수	인용금액(원)	지연손해금 기산일	비고
1	<삭제처리>	<삭제처리>	4, 9[7], 22	3	5,000,000	2024. 3. 8.	공시송달 갑 제3호증
2			4, 9, 16, 24	16 (4개씩 4개 사이트)	320,000	2022. 3. 30.	갑 제5호증
3			2, 4, 9	3	60,000	2023. 11. 23.	갑 제6호증
4			4, 9, 16, 24	16 (4개씩 4개 사이트)	320,000	2022. 3. 31.	갑 제7호증
5			4, 9, 16, 24	4	80,000	2022. 3. 30.	갑 제8호증
6			4, 9, 16, 24	4	80,000	2022. 3. 30.	갑 제10호증
7			4, 9, 16, 24	4	80,000	2022. 3. 30.	갑 제14호증
8			4, 9, 16, 24	4	80,000	2022. 3. 30.	갑 제16호증
9			4, 9, 16, 24	4	80,000	2022. 3. 31.	갑 제17호증
10			4, 9, 16, 24	4	80,000	2022. 3. 29.	갑 제22호증
11			4, 9, 16, 24	4	80,000	2023. 11. 22.	자백간주 갑 제23호증
12			4, 9, 16, 24	4	80,000	2023. 7. 21.	갑 제24호증
13			4, 9, 16, 24	4	80,000	2023. 11. 30.	자백간주 갑 제25호증
14			4, 9, 16, 24	4	80,000	2022. 3. 31.	갑 제27호증
15			4, 9, 16, 24	4	80,000	2022. 3. 29.	갑 제28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16			4, 9, 16, 24	4	80,000	2022. 3. 29.	갑 제29호증
17			4, 9, 16, 24	4	80,000	2022. 3. 30.	갑 제30호증
18			4, 9, 16, 24	4	80,000	2022. 3. 30.	갑 제31호증
19			4, 9, 16, 24	4	80,000	2022. 3. 29.	갑 제32호증
20			4, 9, 16, 24	4	80,000	2022. 3. 31.	갑 제33호증
21			4, 9, 16, 24	4	80,000	2023. 7. 20.	갑 제34호증
22			4, 9, 16, 24	4	80,000	2022. 3. 29.	갑 제35호증
23			4, 9, 16, 24	4	80,000	2022. 3. 29.	갑 제36호증
24			4, 9, 16, 24	4	80,000	2023. 7. 21.	자백간주 갑 제37호증
25			4, 9, 16, 24	4	80,000	2022. 3. 29.	갑 제38호증
26	<삭제처리>	<삭제처리>	4, 9, 16, 24	4	80,000	2022. 3. 30.	갑 제40호증
27			4, 9, 16, 24	4	80,000	2022. 3. 30.	자백간주 갑 제41호증
28			4, 9, 16, 24	4	80,000	2022. 3. 29.	갑 제43호증
29			4, 9, 16, 24	4	80,000	2022. 3. 30.	갑 제44호증
30			4, 9, 16, 24	4	80,000	2022. 3. 31.	갑 제45호증
31			4, 9, 16, 24	4	80,000	2022. 4. 16.	갑 제46호증
32			4, 9, 16, 24	4	80,000	2023. 7. 21.	자백간주 갑 제48호증
33			4, 9, 16, 24	4	80,000	2022. 3. 30.	갑 제49호증
34			4, 9, 16, 24	4	80,000	2023. 12. 21.	공시송달 갑 제50호증
35			4, 11, 12, 23	4	80,000	2023. 7. 21.	갑 제51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36	<삭제처리>	<삭제처리>	4, 9, 16, 24	4	80,000	2022. 3. 29.	갑 제52호증
37			4, 9, 16, 24	4	80,000	2023. 11. 24.	갑 제54호증
38			4, 9, 16, 24	4	80,000	2022. 3. 30.	갑 제55호증
39			4, 9, 16, 24	4	80,000	2022. 3. 29.	갑 제56호증
40			4, 9, 16, 24	4	80,000	2023. 7. 21.	갑 제57호증
41			4, 9, 16	3	60,000	2022. 3. 29.	갑 제58호증

7) 피고들이 이용한 사진은 9번 사진의 좌우를 반전한 형태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별지 3]

청구금액표

순번	피고	청구금액(원)
1	<삭제처리>	10,000,000
2		15,000,000
3		15,000,000
4		12,000,000
5		9,000,000
6		6,000,000
7		3,000,000
8		3,000,000
9		3,000,000
10		3,000,000
11		3,000,000
12		3,000,000
13		3,000,000
14		3,000,000
15		3,000,000
16		3,000,000
17		3,000,000
18		3,000,000
19		3,000,000
20		3,000,000
21		3,000,000
22		3,000,000
23		3,000,000
24		3,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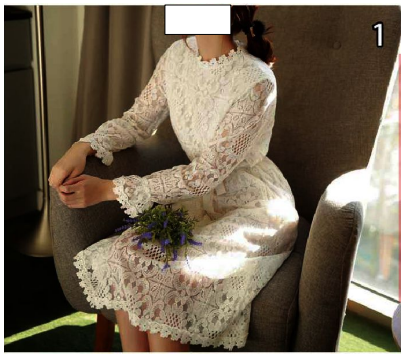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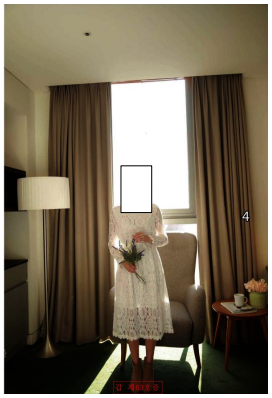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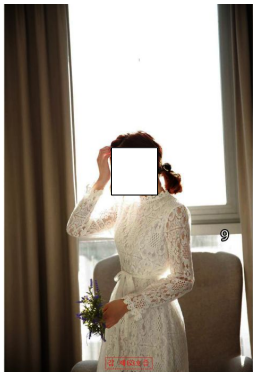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25	<삭제처리>	3,000,000
26		3,000,000
27		3,000,000
28		3,000,000
29		3,000,000
30		3,000,000
31		3,000,000
32		3,000,000
33		3,000,000
34		3,000,000
35		3,000,000
36		3,000,000
37		3,000,000
38		3,000,000
39		3,000,000
40		3,000,000
41		3,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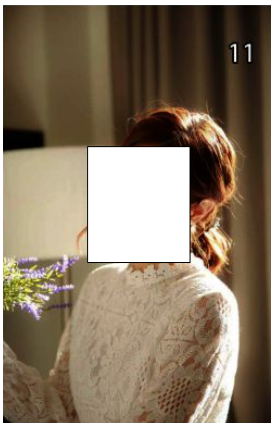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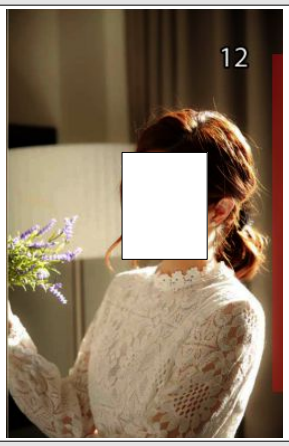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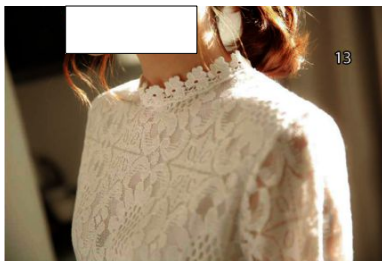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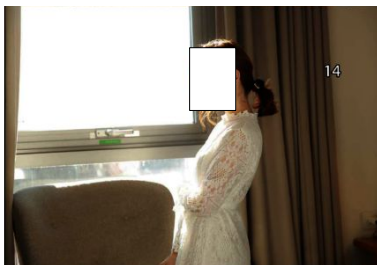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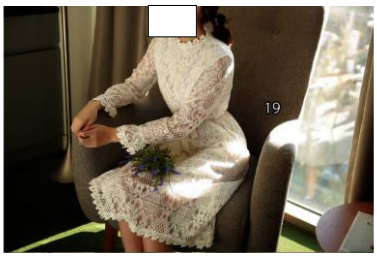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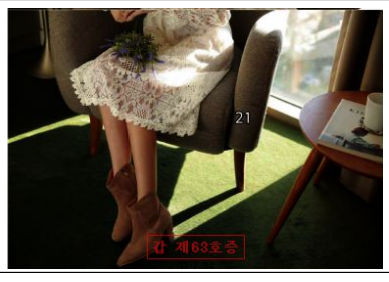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별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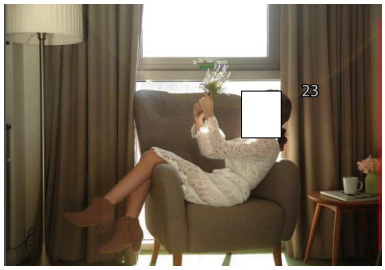
이 사건 각 사진

1	2	3
		
4	5	6
		
7	8	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8

22	23	24
		
25		
		